

'92 낙농 육우업 소득 표준을 확정

'92년도 낙농업 및 육우업 소득표준율이 5.8%, 5.2%로 각각 확정 고시되었다. 국세청은 '91년도 기본율 6.1%, 5.5%이던 낙농업 및 육우업의 소득표준율을 '92년도는 5.8%, 5.2%로 인하조정하고, '91년도에 낙농육우업이 상한율 7.2%, 6.5%로 되어 있던 세율을 "차등율"로 하여 인하 조정하였다.

차등율은 계속해서 5년이상 계속사업을 영위한 경우 즉 '87. 12. 31이전부터 낙농이나 육우업을 계속한 경우는 20% 경감된 4.6%, 4.1%로 적용되고, 10년이상 장기간 경영한 경우 즉 '82. 12. 31이전부터 낙농이나 육우업을 영위한 경우는 기본율에서 30%의 경감된 4.1%, 3.1% 세율이 적용된다. 이로써 낙농육우업은 '91년보다 경감된 세금을 납부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소득표준율 인하를 위해 그동안 협회에서 다각도로 관계요로에 건의활동을 추진해 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소득표준율은 농가부업적인 축산규모를 초과하는 농가의 경우 전년도 1년동안을 소득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농가 스스로 계산하여 관할세무서에 신고하게 되는데, '93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농가부업적인 규모는 젖소 20두, 한우 30두 까지이고 육성우 경우는 2마리를 성우 1두로 계산하게 되는데, 이 규모 이상의 농가에 대해서만 소득표준율이 적용되는 것이다.

예를들어 낙농의 경우 소득표준 기본율이 5.8%이므로 총 수입금액에서 94.2%는 비용으로 간주되고 5.8%만 소득으로 보아 그 금액에 대하여만 세금을 부과시키는 것이다. 그러나 기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소득금액이 1천만원 이상이 되는 농가에 대해서는 차등율 적용이 되지 않는다.

한편 '92년 양돈업의 소득표준율 기본율은 6.2%, 산란계 6.2%, 육계 6.8% 기타 가금사육 11.9%, 양봉 15.7% 가금부화업(허가) 11.0%, 가금부화업(무허가) 18.0%, 양잠 11.0%, 사슴 14.7% 말 및 양사육 11.9%, 기타 축산업은 11.9%로 각각 확정되었다.